

# 예산총칙

2021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| 633,942,133 | 19,018,264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| 614,940,841 | 18,448,225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| 19,001,292  | 570,039 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| 19,001,292  | 570,039   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| 15,318,077  | 459,542    |
|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      | 47,378      | 1,421      |
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 | 2,312       | 69        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| 1,169,128   | 35,074     |
| 농공지구(단지)조성관리특별회계 | 2,464,397   | 73,932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"과 같다.

제 3 조 2021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총예비비는 4,000,000천원으로 그중 일반예비비는 1,000,000천원 이며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3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기분한도액은29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